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용산구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무내용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명	2024.1.1.~ 2024.12.31. (1년)	주차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불법 주·정차 단속주차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전화상담 및 행정업무 보조

※ 근무실적평가 결과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3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평일, 토요일, 공휴일 구분 없이 주·야간·심야시간 교대 근무
 - 업무내용에 따라 탄력적 조정·시행
 - 근무내용 : 불법 주·정차 단속, 전화 상담 및 행정업무 보조
 - 단속업무 근무조 편성, 전화상담 및 행정업무 등의 업무분장은 채용 후 임용대상자의 경력과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 ※ 불법 주·정차 단속 시 민원마찰, 민원대응의 어려움이 많아 책임성과 성실성이 요구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응시 자격 요건

임용등급	자격 요건
직무분야 응시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 공고일 기준 현재 18세 이상 65세 미만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제2종운전면허(보통) 이상 소지자로 실제 차량운전이 능숙한 사람 ○ 현장 단속업무 수행(보행·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사람 ○ 주말, 공휴일 및 주·야간·심야시간 구분 없이 근무 가능한 사람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관련분야 :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의 단속, 사무, 상담, 운전경력 등 - PC 및 스마트폰 활용이 능숙한 사람 (워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 관내 지리에 밝고 현장단속 업무수행이 원활하며 심신이 건강한 사람

※ 응시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보수 수준

□ 기준연봉 : 금20,454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에 의거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2023.1.6.개정)]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주40시간	주35시간 적용시
마급(9급상당)	50,039	23,375	20,454

- 기타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11.14.(화) ~ 11.16.(목)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장소 : 용산구청 주차관리과(6층, ☎ 2199-782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등기)
 - 주소 : 우(04390)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6층 주차관리과 채용담당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용산구 수입증지(구청 2층 민원여권과 판매)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우편 접수 시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서류 분실 방지 목적)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채용일정(안)

내 용	일 정	장 소
채용공고	2023. 11. 3.(금)	
응시원서 접수	2023.11.14.(화) ~ 11.16.(목)	방문·우편접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3. 11. 22.(수)	
면접시험	2023. 11. 30.(목)	구청 지하2층 소회의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3. 12. 1.(금)	
최종합격자 발표	※ 인사위 일정에 따라 추후확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 면접일정 등은 반드시 공고문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1차 합격자발표 : 2023. 11. 22.(수)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나. 2차시험(면접시험)

- 대상자 : 1차시험 합격자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12. 1.(금) / 개별통보
-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합격자 등록

- 등록기간 : 2023. 12. 4.(월) ~ 12. 6.(수) <3일간>
- 등록장소 : 용산구청 주차관리과(6층)
- 등록서류 : 면접시험합격자 개별 통보 시 안내
- ※ 위 등록기간 중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불합격처리)

라.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① 응시원서 1부 (응시원서 등 첨부된 양식 사용)
- ② 이력서 1부
- ③ 자기소개서 1부
-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 ⑤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⑦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사항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⑧ 구직등록확인증 1부 (용산구청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 접수 ☎2199-8239)
- ⑨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 ⑩ 운전경력증명서 1부
- ⑪ 채용 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⑫ 응시요건, 자기소개서 등 관련 증빙자료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 반드시 첨부
 -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받은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란에 공고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18.9.21.)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을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용산구청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 ☎ 2199-7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